

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17. 1. 3.>

##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	
신청인	사업장 명칭	대표자 성명		
	주소			
	전화	팩스	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	
심사종류	최초인증심사 <input type="checkbox"/>	갱신인증심사 <input type="checkbox"/>	중간인증심사 <input type="checkbox"/>	임시인증심사 <input type="checkbox"/>
심사사유	※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			
선박상세	선명	선종	항행구역	
	선박번호 (선급번호)	IMO 번호	총톤수	
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일		심사 희망일		
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		대리점 연락처		

「해사안전법」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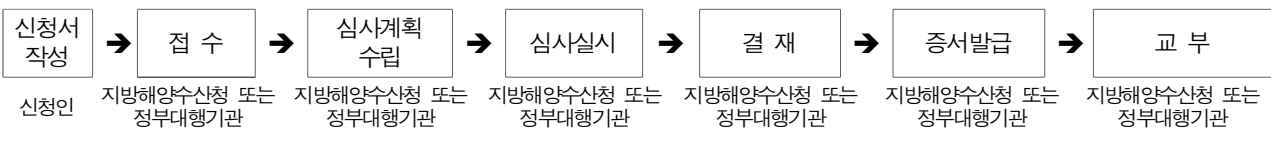
(전화번호 : )

**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**

귀하

첨부서류	<p>1. 공통 제출서류: 「해운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「해사안전법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해사안전법」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. 개별 제출서류</p> <p>가.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: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</p> <p>나.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)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)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</p> <p>다.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)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: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)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: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</p>	수수료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: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</li> <li>○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: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</li> </ul>

### 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